

학습지 교사에게 발생한 스트레스에의한 불안장애와 우울증

성별 여 나이 32세 직종 방문지학습교사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
최 ° ° (여, 32)은 1998년 4월 방문학습지 회사에 교사로 입사한 후 2000년 9월 새로 부임한 지국장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받았고 2002년 11월 정신과에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았다.

2 작업화경

최 ° ° 은 이전에는 동료교사나 상급자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000.9.에 부임한 신임지국장으로부터 업무와 업무외적인 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. 동료들은 이에 대항하면서 극복하였으나 최 ° ° 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더욱 순종적으로 일하면서 노력을 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

2001.6~7.경부터 오른쪽 배 통증이 있었으며 2002.5.8.에 업무 중 갑자기 손발에 마비가 왔고 죽겠다고 외쳤으며,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. 지국장은 2002.7.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으나 증상은 심해졌다. 2002.8. 업무 중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, 2002.12.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 때 정신과에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았고, 심리검사에서는 내면의 분노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

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.

4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

정신과 특진결과는 전형적인 공황장애라기보다는 '달리 분류할 수 없는 불안장애' 와 '미분화성 신체형 장애'에 가깝다는 소견이다.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으 로는 "상사로부터 받은 비평상적인 스트레스가 인정되며 이전에는 대인관계가 좋았 고 정신질환도 없었고 직무 상황의 변화와 질병 발생 간의 시간적 관련성도 인정이 된다는 점"이었다.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으로는 "증상이 다른 동료에서는 없고 혼 자에게만 나타났다는 점과, 상사가 전근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 점"이었다.

5 결 론

최 ㅇ ㅇ의 공황장애는

- 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불안장애와 미분화성 신체형 장애로 판단되며,
- ② 이는 과도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이것이 좌절된 분노감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낮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크지만,
- ③ 상사와의 갈등 이외에는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이 없고 그 이전에도 전혀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,

업무 중 노출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. 그러 나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은 스트레스원이 해소되면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 므로 요양기간은 결정 후 6개월 이내로 국한하여야 한다.